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55 발의연월일: 2025. 1. 6.

발 의 자: 송재봉ㆍ이수진ㆍ장종태

소병훈 • 허성무 • 윤종오

임호선 • 박희승 • 강준혂

민형배 · 김성환 · 이광희

김 윤 • 이건태 • 권향엽

주철현 · 김우영 · 박용갑

정진욱 · 문금주 · 이병진

임미애 · 양부남 · 김영환

이연희 • 전진숙 • 김영배

이강일 의원(28인)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현재 금융시스템은 지역 내에서의 경제순환 및 발전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지역 금융기관의 수입이 해당 지역에 재투 자되지 않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일자리와 노동력도 함께 유출되 는 것으로 보임. 이는 비수도권의 지역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음.

기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보조금 제공, 기금 마련, 세제 혜택 등으로 장기적인 정책 수행이 어렵고, 정책 대상도 한정된다는 한계가 존재함. 또한, 지역 금융기관의 경우 영세한 규모로, 시중금융기관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해 대규모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존속성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지역경제 및 지역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를 막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및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공공은행'설립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소멸까지 우려되는 지역 불균등 발전의 문제 및 금융 소외 문제, 그리고 시중금융기관의 지역 내 독과점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중앙 종속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금융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자립도 증진, 지방자치 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의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금융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자립도 증진,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지역공공은행에는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안 제3조).
- 다. 지역공공은행의 자본금은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 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함(안 제6조).

- 라. 지역공공은행에 임원으로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안 제10조).
- 마. 은행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고,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며,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금융위원회가 임면함(안 제13조).
- 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공공은행의 정관에 관한 사항, 감사의 임면 등 지역공공은행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의결하기 위하여 지역금융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은 지역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지역금융·지역상생협력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임명·위촉함(안 제18조 및 제19조).
- 사. 지역공공은행은 지역주민·기업 자금 지원,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 대출·투자, 지역금융 접근성 및 유동성 증진, 지방자치단체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금융지원 등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며, 이를 위하여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증권의 응모·인수·투자, 채무의 보증·인수, 예금·적금의 수입, 지역금융채권의 발행,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22조).

- 아. 지역공공은행은 자금 조달을 위하여 지역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역금융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수 있음(안 제26조).
- 자. 지역공공은행은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채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준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함(안 제27조).
- 차.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 등 채무의 원리금 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지역공공은행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기금 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28조).
- 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감독, 명령, 시정명령 등 조치,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고, 감독 에 필요한 경우 보고서 제출 요구 또는 장부·서류 등의 검사를 할 수 있음(안 제37조 및 제39조).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금융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자립 도 증진,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격 등) ① 지역공공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 ② 지역공공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조례 및 정관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어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지역공공은행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 ②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제4조(영업구역) 지역공공은행의 영업구역은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 제5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지역공공은행의 본점은 영업구역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곳에 둔다.

- ② 지역공공은행은 영업구역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대리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6조(자본금) ① 지역공공은행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되, 지역공 공은행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지역공공은행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 제7조(정관) ① 지역공공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본점, 지점, 대리점 및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관한 사항
 -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 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9.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 10. 회계에 관한 사항
 - 11. 공고의 방법
 - ② 지역공공은행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18조에 따른 지역금융위원

- 회(이하 "지역금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8조(등기) ① 지역공공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지역공공은행이 아닌 자는 지역공공은행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 제10조(임원) ① 지역공공은행에 임원으로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둔다.
 - ② 은행장 및 감사는 각각 1명으로 한다.
 - ③ 전무이사 및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사외이사가 3명 이상으로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은행장은 지역공공은행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은행장은 지역금융위원회의 자문을 반영하여 지역공공은행을 운영한다.
 - ③ 은행장은 지역금융위원회가 심의 · 의결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전무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장을 보좌하며, 은행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은행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감사는 지역공공은행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제12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은행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지역공공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 ③ 은행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3조(임원의 임면) ① 은행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이하 "운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 ③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금융위원회가 임면

한다.

-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임 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계산한다.
- 제15조(대리인의 선임) 은행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지역공공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6조(직원의 임면) 지역공공은행의 직원은 은행장이 임면한다.
-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지역공공은행의 임원 및 지역금 융위원회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지역금융위원회

- 제18조(지역금융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공공은행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의결하기 위하여 지역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7조에 따른 정관에 관한 사항
 - 2. 제13조제3항에 따른 감사의 임면
 - 3. 그 밖에 지역공공은행 및 지역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 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 1. 지방의회의원
 - 2. 지역공공은행의 영업구역 내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 3. 지역금융 및 지역상생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지역공공은행의 영업구역 내에서 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지방의회의원인 위원의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20조(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수 있다.

-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2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로는 지역공공은 행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임명한다.
 -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⑧ 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업무

- 제22조(업무) ① 지역공공은행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 1. 지역주민ㆍ기업 자금 지원
 - 2.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 대출 투자
 - 3. 지역금융 접근성 및 유동성 증진
 - 4. 지방자치단체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금융지원
 -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6.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지역금융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의 공급이 필요한 분야
 - ② 지역공공은행은 제1항의 자금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응

- 모·인수 및 투자. 다만, 주식의 인수는 지역공공은행의 납입자본 금과 제32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3.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하는 자금 조달
 - 가. 예금 · 적금의 수입
 - 나. 지역금융채권이나 그 밖의 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의 차입. 다만, 지역공공은행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차입하여 생긴 채무의 변제 순위는 지역공공은행이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의 변제 순위보다 후순위로 한다.
- 5. 내국화 · 외국화 업무
- 6.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이나 그 밖의 사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특정 사업에 대한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의 검토 및 계획·조사·분석·평가·지도·자문 등 용역의 제공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업무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필요한 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업무
- ③ 지역공공은행은 제1항제2호의 분야에 공급된 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23조(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지역공공은행이 부담하는 외화표 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은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 체가 보증할 수 있다.
- 제24조(업무방법서) 지역공공은행은 제22조에서 정한 업무의 방법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방법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5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지역공공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지체 없이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은 자금공급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 ③ 지역공공은행이 연도별 업무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제26조(지역금융채권의 발행 등) ① 은행은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역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다.
 - ② 지역금융채권의 발행은 지역공공은행만이 할 수 있다.
 - ③ 지역금융채권의 발행액, 지역공공은행이 보증한 사채 및 채권의 현재액과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의 합계액은 지역공공은 행의 납입자본금과 제32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10배 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 이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한 지역금융채권의 현재액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지역금융채권의 현재액
- 3. 다른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을 포함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험회사 및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아 보증하거 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
-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를 보증하 거나 인수한 현재액
-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
- ④ 지역금융채권은 할인이나 할증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⑤ 지역금융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수 있다.
-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금융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예금지급준비금 등에 관한 준수 사항) ① 지역공공은행은 예금 채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준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 ② 지역공공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현금, 금융기관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 제28조(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①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는 지방 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예금 등 채무의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지역공 공은행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지급 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 ② 지역공공은행은 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에서 예금등을 예금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공공은행을 갈음하여 이를 변제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예금자의 변제금 청구권은 변제금 지급의 개시일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⑦ 지역공공은행이 변제금 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 자에게 행하는 안내·통지 등은 제6항 및 「민법」 제168조제3호에 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제29조(기금의 조성·운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 1. 지역공공은행이 납입하는 출연금
 -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3.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5. 그 밖의 수입금
 - ② 제1항 각 호의 재원 조성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30조(기금의 목표적립규모 설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적립 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의 목표적립규모(이하 이 조에 서 "목표적립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② 목표적립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공공은행의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목표적립규모는 상한 및 하한 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의 경영여건과 기금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적립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적립규모를 재설정할 수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적립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공공은행이 납부하는 출연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제5장 회계 및 자산

- 제31조(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 ① 지역공공은행의 회계연도는 지방 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 ② 지역공공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수입과 지출의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지역공공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지 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서류
- 제32조(이익금의 처리) ① 지역공공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 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 자본금의 총액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40 이상을 적립한다.
- 2. 제1호의 적립을 제외한 잔여이익금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제33조에 따라 손실을 보전한 후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을 배당하기로 한 때에는 현금이나 현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배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손실금의 보전) 지역공공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한다.
- 제34조(여유금의 운용) 지역공공은행은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 제35조(재산 소유의 제한) 지역공공은행은 영업에 필요하여 취득하거나 채무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한 물건과 그 밖에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 외에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 제36조(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그 특별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공공은행이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제6장 감독

- 제37조(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역공공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 정지
 - 3.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의 임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지역공공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해임, 직무정지, 경고 및 주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의 직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 의로 위반하거나 지역공공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

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공공은행 은행장에게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 적절한 징계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지역공공은행 은행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역공공은행 은행장은 이를 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38조(임원의 해임사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심의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내리는 명령, 지역공공은행에 관한 조 례 또는 지역공공은행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 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무이사 또는 이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은행장의 제청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 제39조(보고서의 제출 및 서류의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37조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공공은행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공공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7장 벌칙

- 제40조(벌칙) ① 지역공공은행의 임직원이 자금을 지역공공은행의 사업 목적 외에 사용·대출하거나 지역공공은행의 재산을 투기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지역공공은행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6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
 - 2. 제32조를 위반하여 순이익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35조를 위반하여 지역공공은행으로 하여금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게 한 경우
- 제41조(양벌규정) 지역공공은행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지역공공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지역공공은행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지역공공은행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2조(과태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지역공공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 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